

인천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8나71239, 2019나4557(중간확인의소) 판결

[매매대금 · 매매대금 청구권 부존재 확인의 소]

전 문

원고(중간확인피고), 피항소인

A

피고(중간확인원고), 항소인

B

중간확인원고 보조참가인

C

변론 종결 2020. 11. 11.

판결 선고 2020. 12. 23.

제 1 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9. 13. 선고 2018가소212357 판결

주 문

1. 중간확인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중간확인원고)의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3.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중간확인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중간확인피고)가, 중간확인의 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중간확인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중간확인원고 보조참가인이 각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원고(중간확인피고)의 본소 청구취지

피고(중간확인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중간확인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중간확인의 소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대금 청구사건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25,000,00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피고는 당심에서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

이 유

1. 중간확인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적법 여부

가. 관련법리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5. 29.자 2014마4009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중간확인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사무실 집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확정될 경우 위집기 등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고, 피고 대신에 D의 업무를 맡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보조참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중간확인원고 보조참가 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이해관계는 소송의 결과에 대한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에 불과 하며 달리 중간확인원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송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위 판결을 전제로 중간확인원고 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중간확인원고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피고의 중간확인의 소 적법 여부

가. 관련법리

중간확인의 소는 본래의 소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다. 또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하는데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는 중간확인의 소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25,000,000원의 부존재확인 판결을 구하고 있다. 피고로서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에 응소하여 원고의 주식매매대금 청구에 관하여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히 법적지위를 확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식매매대금 청구권 부존재에 대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피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년 6월경 E로부터 D의 주식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확약서에 날인하여 피고에게 송부하였으나, 피고는 위 주식양도확약서에 날인하지는 않았다.

주식양도확약서

보유주식: 5,000주

원고는 D의 주주로서 본인의 주식을 모두 대주주 피고에게 양도할 것을 확약함

양도조건: 양도가액은 액면가 이상으로 하되 대표이사과 담당변호인에게 일임하기로 함

다. 원고는 2016. 10. 18. 및 2016.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인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6. 11. 7. 원고에게 주식인수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수입이 되는대로 원고를 우선대상자로 분류하여 매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니 금년 말까지만 기다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양도확약서를 작성하여 송부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수입이 되는대로 원고를 우선대상자로 분류하여 매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매매계약서 등명시적인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가 제출한 주식양도확약서(갑 제3호증)는 피고의 날인이 없고, 양도가액이나 지급시기 역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주식양도확약서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확정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갑 제6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면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겠다는 것일 뿐, 이 사건 주식을 25,000,000원에 확정적으로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갑 제8호증)는 "큰 돈은 아니지만 설밑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왔어요"라는 내용으로,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중간확인의 소 및 중간확인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재환, 판사 송한도, 판사 박정미